

協同組織團體로서의 契에 關한 變貌 研究

朱 奉 圭*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契의 起源과 性格
- III. 契의 發展과 變貌
- IV. 要 約

I. 問題의 提起

契란 2人 이상 인간이 相夫相助精神에 입각하여 社會, 經濟, 產業 및 教育 기타 一般生活上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합된 相互組織을 말한다. 이것은 韓國社會 특유의 組合的 성격을 지닌 協同組織으로 전통적인 생활구조의 社會經濟的인 측면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던 組織體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이나 서로 관련있는 인간들이 일정한 社會的・經濟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自律的 協同組織體임이 분명하다.

이에 本稿는 自律的이며 自生的인 協同組織團體로서의 契에 關한 기원과 성격을 정립하고 동시에 契의 變貌內容을 살펴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契의 起源과 性格

契의 기원에 대해서는 新羅時代의 부녀자의 手紡共同作業體였던 嘉俳契를 그것의 嘴矢로 보는 견해와 高麗時代의 軍布契에 의해 일반화되었으며 李朝時代에 이르러 鄉約과⁽¹⁾ 社倉에 의해 널리 보급 확대된 바 있다는 견해[文定昌 (1942, p. 296)]가 있다.

契의 기원에 대하여 그것의 조사를 통하여 起源을 新羅의 嘉俳에 두고 그것이 高麗朝 이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經濟學科 教授。

(1) 鄉約契란 儒林이 文廟의 祭祀費 및 鄉校의 維持・經營 등을 위하여 결성된 경제단체로서 일반적으로 1郡을 구역으로 하여 鄉約에 가맹된 家門으로써 조직된 것을 말한다. 鄉約契의 특징이라 하면 개인을 契員으로 하지 않고 鄉約에 加盟된 家 즉 氏門을 단위로 취급하여 그의 一族一門에 속하는 자는 당연히 契員의 구성분자로 되어 있는 계를 말한다.

후에는 納稅團體의인 구실을 하면서 이룩되었다는 견해[李覺鍾 (1923, pp. 1-2)], 契는 월시공동체에서 相互扶助의인 관념의 발달에서 연유된 것이며, 그것은 封建社會의 기본단위로서의 洞·里의 內部生活을 取締해 온 自治團體의인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李清原 (1936, p. 149)], 契는 新羅에서의 종교적인 행사를 중심으로 한 부족의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러기 위한 비용의 적립과 利殖方法 등의 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崔南善 (1943, pp. 60-1)], 그리고 契의 調查에서 그 기원을 新羅에서의 酒宴에 두고 高麗末 이후에는 인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納稅團體로 보급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善生永助(1926, p. 3)] 등이 있다.

그 밖에도 契의 경우 契의 기원과 본질을 규정하되 史實을 인용하여 일본의 「講」과 비교하면서 農耕儀禮를 중심한 촌락에서의 土地神과 결부된 촌락적인 조직체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宮原鬼一(1953, p. 26)], 契의 기원을 「두례」에 두고 古代社會의 인위적인 精神協同體로서의 「두례」 조직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견해[李丙燦 (1958, p. 356)], 契는 高麗時代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며 李朝時代에 와서 보급된 일종의 相互扶助를 목적으로 한 단체조직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崔虎鎮 (1959, p. 36)]가 있다.

그리고 契의 團體性과 기능을 역설하면서 契는 自主 및 自律의인 施設團體라 하고 특히 그것은 李朝時代에는 일반 민중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룩하였던 相互組織의인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李萬雨 (1968, p. 97)]가 있으며 契의 기원에 대하여 그것은 新羅時代의 嘉俳에서 비롯되었으며 상품경제가 미발달한 단계에 있어서 타율적으로 형성된 조직으로서 근대적인 協同組合에 선행하는 맹아적 協同組合이라는 견해[宋鍾福 (1962, p. 25)] 등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契의 起源과 内容을 살펴볼 때에 契는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전해온 相扶相助의 민간협동체로 規定할 수 있고 契는 新羅時代 부녀자들의 길쌈내기인 嘉俳에서 비롯하여 高麗時代를 거쳐 발전을 거듭해 왔고 李朝末期에는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契로 盛行普及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契는 그 역사가 길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똑같은 組織體系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종류나 명칭, 구조와 내용 등이 매우 다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어떻든 契는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서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社會的·經濟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집된 相扶相助의 組織團體의 性格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III. 契의 發展과 變貌

新羅時代의 契는 嘉俳契나 香徒契로 分類되는 가운데 발전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嘉俳契는 儒理王 9년에 王이 3府를 정한 후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王女 두 사람으로 하여 금 각각 府內의 여자를 거느리어 편을 짜고 패를 나누어 秋 3月 既望(16일)으로부터 날마다 일찍 6府의 마당에 모여 길쌈을 시작하여 2夜에 종결하도록 한 데서 연유하였다. 8월 15일에 이르러 그 패의 多少를 考查하여 敗한 편은 酒食을 준비하여 이긴 편에 사례하고 이어 歌舞와 遊戲로서 共同娛樂을 하는 社交團體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香徒契는 花郎徒에서 연유된 것이나 契의 기능은 擴大된 道德的・宗教的・娛樂的・社交的인 共同團體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당시에 있어서 一般社會에 미치는 영향이 커울 뿐만 아니라 후일의 契의 發展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花郎制度는 귀족사회와 평민사회와의 사이에 橋梁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花郎은 보통 貴族社會에서 선출됨이 원칙이었으나 花郎을 중심으로 모여든徒衆은 階級的 지위를 不問하였으며 따라서 花郎制度는 徒衆을 대상으로 하는 特殊團體였다.

물론 香徒契의 徒衆은 산천을 순례하면서 심신을 수양하고 輪番으로 香徒宴을 베풀어 共同合食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國家社會와 군주 그 밖의 親友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義를 중히 여기며 단체생활 및 국가생활을 떠나서 개인이 없고 개인이 단체와 국가를 위하여 一身을 바치는 것은 침되고 명예로운 것으로 昇華시키는 것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新羅時代의 契는 新羅建國初期의 사회적인 배경을 잘 반영하고 氏族社會에 있어서의 共同耕作, 共同遊興 및 共同合食하는 紐帶感과 共感帶를 조성하는 바탕에서 구체화되고 동시에 실질화된 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高麗朝에서의 契는 그것의 발전이 국가의 주민에 대한 統制力과 깊은 關係 속에서 이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國家의 통제력이 硬化할 경우에는 庶民團體의 存續성이 박약하여지고 국가의 통제력이 軟化할 경우에는 庶民團體의 內生성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高麗朝는 國家와 庶民團體의 상호관계가 평범하였기 때문에 新羅時代의 契의 정신을 계승하였을 뿐이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高麗朝의 경우 國家 對庶民, 庶民 對 國家の 上下關係로 인한 契는 발전할 수 없었고 다만 서민사회의 단순한 사교단체로서의 契가 조직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

운데 契로서 존립되고 있었던 것은 同甲契를 비롯하여 玄武契 그리고 燈下不明契[大韓地方行政共濟會 (1985, pp. 62-3)] 등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李朝時代의 契는 鄉約에 바탕을 두고 발전되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鄉約이란 郡을 단위로 한 指導者階級인 兩班儒生 즉 儒林의 도덕적·정치적 自治結社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鄉約의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지목되고 있다[文定昌 (1942, pp. 309-10)].

첫째, 德業相勸으로, 德業이란 儒教道德의 근원인 부모에 대한 孝를 비롯하여 君에 대한 忠誠, 형제에 대한 友愛, 上司에 대한 尊敬, 남녀에 대한 禮儀, 族에 대한 親睦, 言助에 대한 信賴, 그 밖에 下位級에 대한 애경 그리고 신의와 약속에 대한 이행 등등이다.

둘째, 過失相規로, 道德的 見地에서 好感되지 않는 것은 모두 過失로 인정하고 心身維持에 대하여서는 謹身을 바탕으로 하며 上司에 대한 禮儀에 결격됨이 없게 하며 約속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한 規約에 의해서 벌을 받도록 한다.

셋째, 禮俗相交로, 鄉約員 상호간에 있어서는 年初에 交禮를 하도록 하며 婚家를 경축하고 80세의 고령에 이르면 約員相集하여 祝賀를 한다. 喪을 당한 경우에는弔慰를 표하며 금품을 증정토록 한다.

넷째, 患難相恤로, 契員 중 수해, 화재 및 도난, 기타 위급에 직면한 때에는 금품을 酿出하여 相扶相助하며 疾病大甚한 경우에는 醫療看護에 진력한다. 全家가 罷病되었을 때에는 家業에 대한 助力은 물론 기타의 救恤에 진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家貧하여 婚姻行事에 여의롭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응분의 扶助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弔慰를 다하고 금품을 증정토록 한다.

이렇듯 鄉約은 도덕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나 또한 다음과 같은 經濟的 團體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곧 社倉의 經營에서 나타나 있었다. 왜냐하면 社倉이란 부락을 단위로 하는 備蓄施設로서 풍년에 餘裕糧穀을 저축하여 흉년의 餓饉에 대비케 하는 施設이었기 때문이다.

원래 社倉은 국가의 시설이며 嘉勵事項의 것이었으나 혈연에 의해 결합되어진 兩班部落에 있어서는 이것을 鄉約事業이라 일컬어 운영된 바 많았고 그 運營方法 가운데 주된 것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文定昌 (1942, p. 311)].

첫째, 社倉의 곡물은 매년 1월 그 契員에 한정하여 대부하며 秋 9月부터 11月間에 2할에 상당하는 수량을 添加하여 현물로 回收한다.

둘째, 凶年時에는 社倉의 미곡을 適宜配分하며 풍년이 되면 이것을 回收補填토록 한다.

셋째, 契員 가운데 官職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금품을 증여한다.

넷째, 倉庫의 計算은 收支均衡表를 만들어 공개도록 하며 후일에 異議가 없도록 한다.

그 밖에 李朝時代의 초기 단계에는 儒林이 文廟의 祭祀費 및 鄉校의 維持經營 등을 위하여 결성한 經濟團體로서의 鄉約契가 그 母體로서 운영되고 있었다. 鄉約契의 契員인 각 門中은 각각의 資力에 따라 금품을 酿出하며 그것으로써 토지를 구입하여 契의 基本財產으로 하고 그 基本財產으로부터 발생되는 收入과 그 밖에 매년 각 門中으로부터 정수하는 곡물 또는 금품으로써 文廟의 祭祀費 및 鄉校의 維持經營費를 支辨하고 있었다. 儒林이 盛行한 때에는 郡縣의 소재지에 반드시 鄉約契가 있었으며 그리하여 이 鄉約契는 郡內의 全儒林의 문중을 契員으로 하여 包攝運營되고 있었다. 따라서 광대한 면적의 토지와 多額의 금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運營存立되고 있었던 유력한 財團이 바로 鄉校였고 이 鄉約契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契의 존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李朝時代에서의 일반적인 契의 조직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文定昌 (1942, pp. 292-303)].

契의 設立은 자유로운 것이었으며 契는 완전한 自主自律의 團體였다 그리고 契員의 加入 및 脫退에도 자유가 부여되어 있었으며 出資額은 約定에 의해서 결정하되 각人の 出資額은 均一平等한 것을 일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出資의 종류도 金錢을 비롯하여 穀物, 土地 등이 있었다. 그 밖에도 契의 운영에 있어서는 契는 일반적으로 年 1회 이상의 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 때에 契務 및 財產狀況의 보고, 임원에 대한 選任 그리고 기타 必要事項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契의 중요한 事項은 契員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사람의 詔問을 거쳐 決定運營토록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李朝時代의 契의 組織과 運營이 이뤄지는 가운데 契는 各種各樣의 形態 하에 발달되어 온 것이어서 그 종류도 적지 않으나 그 주된 것만을 要約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것

① 洞里契

洞里契는 洞里住民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부락의 自治團體로서 往年의 朝鮮에는 부락이 있는 곳에 반드시 洞里契가 있었다. 洞里契는 部落 内의 全住民을 契員으로 하여 부락에 있어서 각종 行事는 이 契를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었다. 또한 契員 가운데 곡물 및 금전을 균등하게 酿出케 하고 그것을 기금으로 利殖을 도모케 하며 이렇게 하여 얻은 수입으로 洞里를 위하여 公共事業을 행하고 있었다. 洞里契 사업의 주된 것으로서는 道路, 橋梁, 堤堰, 淚 등의 補修를 비롯하여 洞祠祭典의 거행, 기타 洞里의 區長, 紿使 등의 보수의 支

辨, 그리고 冠婚葬祭用具 및 농기구 등의 利用施設 그 밖에도 無緣故死病人의 措置 등이 있었다.

② 學契

자체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書堂을 경영하는 단체로서 往年의 朝鮮에는 부락이 있는 곳에 書堂이 있고 書堂이 있는 곳에 반드시 學契가 있었다. 學契는 部落 內의 身分, 學識 및 財產 있는 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지고 이들의 契員은 응분의 出資를 통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契에 제공하고 그것의 土地收入 및 매년 契員의 酿出에 연관되는 穀菽 등에 의해서 書堂을 경영하는 것이었다.

③ 松契

주로 部落林의 禁養 및 利用을 목적으로 하여 部落民으로 조직되는 團體로서 契員은 順番의로 산림을 감독하며 契員外의 출입을 금지하며 山野草 및 松葉은 契員共同으로 채취하며 樹木의 성장 후에는 이것을 伐採하여 基本財產으로 하며, 그와 같은 基本金의 收入 利子로써 部落의 諸難에 충당하였다. 또한 동일 地域 내에 산림을 소유하는 사람을 많이 집합시켜 契를 만들고 공동으로 그 산림을 禁養하였다.

④ 洪契 및 堤堰契

共同灌溉用의 洪 또는 堤堰의 維持修繕을 도모하기 위하여 蒙利地域 내의 지주 및 소작인으로 조직되고 각 契員이 그 비용을 분담하거나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洪 및 堤堰의 維持修繕를 행하는 것이었다.

(2) 相扶相助를 目的으로 한 것

① 婚喪契

婚禮 및 喪葬의 경우 廉弔相助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契員의 출자금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利子收入으로써 契員의 혼례 및 契員 또는 直系尊屬의 喪葬의 경우에 금품의 贈與, 用具의 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② 歲饑契

年初의 祭祀에 관한 需用品의 공동구입을 목적으로 하며 契員의 출자금에 의해 基本財產을 조성하고 그의 利子收入으로써 年初의 최대행사인 祖先의 祭祀用의 물품을 공동구입하는 것이었다.

③ 宗契 및 花樹契

同姓의 친족이 相互結合하여 祖先을 崇拜하며 同族愛를 발휘하여 상호간의 親睦扶助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족단체로서 그것의 출자금은 契員 각자의 賚力에 상응하게

差等의으로 설치함을 일반으로 하나 균일하게 하는 것도 있었다. 그 사업의 주된 것은 첫째 祖先의 祭祀費支辨用 土地의 所有經營, 둘째로 門長 및 宗孫의 구제, 셋째 同宗 중의 고아 및 貧困兒의 保有, 넷째 빈곤한 契員에 대한 冠婚葬禮費의 보조, 다섯째 年 1회 동족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④ 勞動契

장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노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정의 出資를 하고 疾病 기타의 災害의 경우에 相互扶助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3) 產業을 目的으로 하는 것

① 農契

移植, 除草 등의 共同作業을 목적으로 하는 農民團體로서 契員이 경작하는 畔地 전체를 통하여 미리 일정을 정하고 契員總動員으로써 작업을 행하는 것이다. 옛날에 朝鮮의 농촌에는 이와 같은 農契에 의한 共同作業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共同作業에 의존하지 않는 移秧, 除草 등은 오히려 예외적이었다. 또한 農業者에 있어서 18세 이상이 되면 契 중에 酒食을 提供하여 새로운 參禮를 하도록 하고 그 契員이 됨에 따라 한 사람의 農民이 되기도 하였다.

② 牛契

牛의 共同購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契員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酿出하여 牛를 구입하고 抽籤으로 購入牛를 교부하게 하며 契 參與農家에게 모두 購入牛가 割愛交付되면 契는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③ 褐負商契

褐負商(市場商人)을 구성원으로 하며 商人制度의 기능을 하는 상인의 단체조직이었다.

(4) 社交를 目的으로 하는 것

社交을 목적으로 結成組織된 契 가운데 주된 것으로는 첫째 射亭을 설치하여 弓術을 수련하는 射亭契, 둘째로 詩酒相樂의 詩契, 셋째로 春秋의 佳節을 선택하여 山遊하는 遊山契, 넷째로 同年輩의 노인으로 조직하여 誕生日 또는 四季의 佳節에 宴遊하는 同甲契 및 老人契 등이 있었다.

(5) 金融을 目的으로 하는 것

① 貯蓄契

저축을 목적으로 일정한 存立期間과 拂込金額을 정하여 手數料를 모아서 저축을 劚行케 하며 他日에 대비케 하는 것이었다.

② 殖利契

利得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一定 金額을 출자도록 하고 이것을 契員 및 契員外者에게 貸付하는 것이었다.

③ 算簡契

일정수의 契員이 一口의 금액과 매 회의 積金, 存續期間, 매 회의 會合日 등을 정하여 그 모여진 금액 가운데 抽籤의 당첨자에게 約定의 契約金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④ 賦福契

일정한 契約金을 모아서 당첨제도를 도입하여 당첨자의 순번에 의해서 巨金을 마련하는 相扶相助의 契였다.

이렇듯 李朝時代에는 各種各樣의 목적 하에 各種各樣의 契가 存立運營되고 있었던 것이나 이것들은 地方自治行政, 教育사업, 사회사업 및 產業經濟에 관한 각종의 施設과 깊이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의 洞里契, 學契, 松契 및 農契 등은 국가적 公共事業을 영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써 실제로 李朝時代의 契는 일반 民衆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相互組織임과 동시에 국가행정의 운영상 불가결한 自主自律의 施設團體로서 存立運營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日帝時代에 이르러 契는 李朝時代의 契의 본질에 입각한 내용을 수긍하면서 初期段階下에서는 放任狀態에서 운영된 바 있었기는 하나 契를 중심으로 民族思想의 鼓吹, 獨立資金調達, 排日運動 전개 등등 反日活動 등이 전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朝鮮總督府의 干涉・規制가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그 예로서 1926년에 朝鮮總督府令으로 「契의 取締에 관한 規制」를 공식화하고 契의 설립운영은 반드시 管轄警察署長의 認許可條件下에서 한다는 항을 삽입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규제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고, 그 밖에도 총독부는 각종각양의 새로운 제도의 실시로 契의 實效性이 破壞되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한 바 있었다. 예를 들어 부탁의 自生的인 團體였던 洞里契 자체가 邑面制度 등의 새로운 행정제도 실시와 행정기구의 정비로 자연히 해체되도록 유도한 것에서 뚜렷하고 또한 教育事業團體였던 學契마저도 학교교육제도의 실시로 書堂이 폐지되면서 자연히 해체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利子契와 같은 信用金融을 목적으로 하였던 각종 經濟協力團體도 은행과 금융조합 등의 침투로 委縮潛跡케 되었다는 사실에서 뚜렷하다.

이러한 가운데 日帝의 契에 대한 육성은 오로지 殖產契에 집약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1932년 이후 전국을 휩쓸고 있었던 農村振興運動에 기초하여 農家交換經濟의 합리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주로 金融組合의 하부조직으로서 殖產

契를 設置運營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든 日帝下의 契는 殖產契의 바탕에서 李朝時代의 자율적이며 자생적인 契組織의 結成運營의 본질과 성격에서 변질된 官의 어떤 目的達成을 위한 측면에서 그리고 官의 監督指揮下에서 이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契의 본성을 알 수 있거니와 이것은 日帝下 殖產契會의 내용[文定昌 (1944, pp. 455-6)]에서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첫째, 殖產契는 隣保相助의 정신에 입각하여 契員 상호간의 경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의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殖產契는 部落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써 조직되는 部落小組合으로서 法人格을 갖도록 한다.

셋째, 殖產契를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동일 地域 내에 거주하는 자 5인 이상의 設立者로 구성하고 規約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넷째, 殖產契의 設立認可가 있을 때에는 2주간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도록 한다.

다섯째, 殖產契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반드시 金融組合 또는 產業組合의 組合員이 되도록 한다.

여섯째, 殖產契에 主事, 副主事 및 監事 1인을 두며 主事, 副主事는 契員 가운데서 선임되도록 하며 監事는 금융조합 또는 산업조합의理事로 충당도록 한다.

일곱째, 殖產契員은 그 소속금융조합 또는 산업조합에 대한 契의 채무에 관하여 連帶責任을 갖도록 한다.

여덟째, 殖產契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定款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殖產契는 도지사가 감독도록 한다.

끌으로 殖產契가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公益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리고 事業繼續이 곤란하다고 할 때에는 도지사는 殖產契의 事業停止 또는 契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등으로 되어 있었다.

해방이 됨과 동시에 契는 8.15 해방후의 사회경제의 혼란과 激動 속에서 庶民大衆의 自慰心을 환기시켰으며, 아울러 國家惠澤의 결핍은 自助的인 扶助契의 結成組織을 통한 自救策의 강구를 절실하게 하여 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재연개 되었다.

그 밖에도 解放 이전부터 物質缺乏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貯蓄意慾이 감소되며 換物心理의 치열화와 더불어 자금의 수요가增加되었다. 자

금의 供給을 은행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常識論理는 봉괴되고 서민층에 대한 融資는 그림의 뼈에 불과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金融機關으로부터 소외를 당한 中小商工業者 및 庶民大衆들은 資金缺乏을 보충하기 위하여 私設資金業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金融契를 비롯하여 殖利契, 貯金契, 商務契, 興數契 등 取利와 金錢契가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위와 같은 金錢契는 농촌지역에서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많이 盛行되어 사업가를 비롯하여 中小商人, 月定收入者 등 대부분의 庶民層이 契에 加入, 活用케 하는 터전을 마련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 契의 組織結成이 가속화되었고 전통적으로 조직적 재능을 가진 한국의 국민에게는 契의 보급이 용이하게 확대되었다.

休戰會談과 더불어 대두하기 시작한 取利契는 1953년부터 전국의 각 도시에 만연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의 契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사례가 많아 零細民들에게 대한被害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많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후 1960~70년에 추진된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착실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金錢契가 잠적하고 相助 및 親睦契 그리고 娛樂契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추세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부터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겪어가면서 면면히 이어 온 우리 고유의 契가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깊이 정착하게 됨에 이르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명맥 속에 契는 農村地域은 물론 都市地域에 까지 확산되면서 보급되었거니와 이러한 契의 실상을 내무부가 198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에 걸쳐서, 都市地域의 경우, 釜山을 비롯하여 大邱, 仁川 등 直轄市의 6개 12동과, 農村地域의 경우, 9도 18군 6읍 390리 를 대상으로 契에 대하여 標本調查를 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大韓地方行政共濟會(1985, pp. 65-79)].

첫째, 농어촌지역에서는 共同事業契를 비롯하여 扶助・福利契, 產業振興契, 金融協力契 그리고 親睦・娛樂契 등이 盛行普及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共同事業契의 경우

洞契, 洞祭契, 大同契, 繁榮契, 祀天契, 社會事業契, 개미契, 솔잎契, 協同契, 編裝契, 班常會契, 班契, 다리契, 보契, 松契, 上水道契, 開發契, 復興契, 保安契, 文庫契, 協力契, 遺物契, 청당契, 月友契, 童心契, 青韋契, 青絲契, 青友契, 정우契, 재수契, 경우契, 青年契, 自鳳堂契, 堂契, 城隍契, 慈善契, 民防衛契 및 防友契.

(2) 扶助・福利契의 경우

喪祭契, 喪興契, 喪布契, 祭米契, 花생이契, 삼베契, 慶用契, 孝子契, 爲親契, 回甲契, 扶助契, 놀부契, 甲員契, 震지契, 兄弟契, 漁契, 雙契, 나을契, 生日契, 이불契, 冷藏庫契, 學契, 子母契, 舍契, 極樂契, 褒具契, 婦女相助契, 국수契, 長者契, 獨子契, 老人契, 自星契, 서각契, 稀姓契, 노친契, 그물契, 冠婚契, 장농契, 婚姻契, 同窓契, 반지契, 혼수契, 동서契, 洋服契, 門中契, 從兄弟契, 장모契, 禮納契, 및 有志契.

(3) 產業振興契의 경우

田契, 水利契, 小滔池契, 淘契 農具契, 漁民契, 船舶契, 營農契, 農契, 품앗이契, 畜產契, 싸이豆契, 韓牛契, 樹村契, 酪牛契, 사로례契, 作物契, 愛林契, 果樹契 및 두레契.

(4) 金融協力契의 경우

쌀契, 貯畜契, 節約契, 銀契, 廢品收集契, 現金契, 婦人契, 財源契, 나락契.

(5) 親睦・娛樂契의 경우

農業契, 연목契, 6.25 同期契, 花煎契, 信友契, 鄉友契, 風物契, 敬老契, 郡子契, 長壽契, 獨子契, 青年契, 親睦契, 土友契, 同樂契, 旅行契, 三辰契, 同門契, 善友契, 槐友契, 觀光契, 孝道觀光契, 行樂契, 弓道契, 宗教人契, 壽石契, 테니스契, 낚시契, 花樹契 및 老人契.

둘째, 都市地域에서는 共同半羊契를 비롯하여 扶助福利契, 金融協力契, 그리고 親睦・娛樂契 등이 普及盛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共同事業契의 경우

이웃契, 奉仕契, 班契, 婦女契 및 青年契.

(2) 扶助福利契의 경우

喪祭契, 冠婚契, 慶權契, 生日契, 回甲契, 進甲契, 還甲契, 結婚契, 學契, 獎學契, 體育振興契, 孝子契, 花樹契, 門中契, 民族契, 兄弟契, 哥契, 同業者契, 技士契, 商人契, 鄉友契, 郡民契, 道民契.

(3) 金融協力契의 경우

반지契, 現金契, 香號契, 落札契, 積立契, 日字契.

(4) 親睦・娛樂契의 경우

孝道觀光契, 行樂契, 趣味晷會契, 門中契, 甲起會契, 同甲契, 同友食契, 바둑契, 낚시契, 書藝契, 登山契, 同窓契, 同期會契, 夫婦契, 童心契, 隨和契, 子女契, 職場契, 同僚契, 青友會契 및 老人會契 등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의 共同事業契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는 마을의 共同費用 분담을 비롯하여 門中의 祭費調達, 公동재정관리 및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의 자체해결을 목적으로

구성된 契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扶助·福利契의 경우는 契員 가족의 哀·慶事, 또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物的·人的인 相互扶助를 目的으로 구성된 契라는 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產業振興契의 경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농사를 비롯하여 農地造成, 水利施設 등 共同努力으로 產業振興과 生產獎勵를 목적으로 構成組織된 契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밖에도 金融協力契의 경우는 現金, 現物을 출자하여 殖利를 도모하고 契員 상호 간의 금전융통과 협력을 목적으로 構成組織된 것이라는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親睦·娛樂契가 갖는 의미는 構成員의 취미와 우의에 따라서 사교와 친목을 도모하고 行樂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이 한국농촌사회경제의 長期變化와 發展研究事例調查마을인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契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7, pp. 119-77)].

農村住民들의 경제적 利益增進을 목표로 결성된 집단적인 契로서 영농에 관련된 水利契를 비롯하여 세마을營農會契, 興農契 등이 있고 저축에 관련된 집단으로서 쌀契, 貯蓄契 그리고 마을金庫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농촌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펼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회적 通念儀禮, 즉 출생과 결혼, 회갑, 사망 등과 관련된 社會的·經濟的 협동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체로서의 爲親契를 비롯하여 壽布契, 술통契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동체적 성격의 褒事契로서 明倫契와 連班契 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親睦關聯의 利益集團의 契로서는 親睦契를 비롯하여 同甲契, 놀이契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에 契의 結成, 組織, 運營이 血緣集團을 비롯하여 地域共同體集團 그리고 利益集團을 매개로 하여 이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契는 餘裕資金의 저축이나 所要資金의 차입을 목적으로 하는 貯蓄契를 비롯하여 契員間의 친목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親睦契, 冠婚喪祭時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共濟契 그리고 部落 내의 全家口가 참여하여 부락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公益契로 구분[姜昌奎 (1978)]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들 契에 대한 加入狀況을 농업협동조합이 1,011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親睦契의 경우 總調查農家 1,011호 중 357호가 이에 加入參與하고 있어서 그것의 비율이 35.3%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어서 共濟契의 경우 307호가 가입하여 그것의 비율이 30.4%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이 公益契로서 184호 加入에 加入比率 18.3%, 그 밖에 貯蓄

契의 경우는 89호의 加入에 그것의 加入率이 8.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農業協同組合中央會 (1988, pp. 1-11)].

위의 農協調查結果에서 사회적 기능이 강한 親睦契가 높은 것으로 나타가 있는 반면에 경제적인 기능으로서의 契인 貯蓄契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초 經濟的인 기능이 강한 契가 相對的으로 약세화되고 있음은, 農村地域에 농협을 비롯하여 地方銀行, 信協, 相互信用金庫 및 郵遞局 등 각종 金融機關의 점포가 확충됨에 따라 농가가 契의 代替手段인 預貯金 및 보험 등 여러 가지 金融商品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要 約

첫째, 新羅時代에서의 契는 歌舞와 遊戲로서 共同娛樂을 목적으로 한 사교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 共同團體의 성격을 지니는 가운데 存立運營되고 있었음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高麗朝에서의 契는 국가와 黨民團體와의 상호관계가 평범하였기 때문에 新羅時代의 契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黨民社會의 단순한 社交團體로서 存立運營되고 있었음에서 그 특색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李朝時代에서의 契는 一般大衆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하는 相互組織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과 동시에 國家行政의 運營上 불가결한 自主自律의 施設團體로서 存立運營되어 있었음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넷째, 日帝下의 契는 李朝時代의 自律의이며 自生的인 契組織의 結成運營의 특성에서 변질된 官의 어떤 目的達成을 위한 측면에서 그리고 官의 監督指揮下에서 存立運營되고 있었음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끝으로 解放直後의 契는 解放後의 사회경제의 혼란과 격동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黨民大衆의 自慰心을 환기시킴과 아울러 國家惠澤의 결핍 하에 自助的인 自救策의 강구라는 목적으로 存立運營되고 있었음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休戰 이후의 契는 取利契를 모체로 하여 성행되고 있었으나 契의 破綻事例가 적지 않게 됨에 따라 일단 契는 潛跡되고 1960年代 初盤의 經濟開發5個年計劃의樹立・推進 이후부터는 相助 및 親睦契를 비롯하여 娛樂契가 급격하게 성행되기에 이르러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연면히 이어 온 고유의 契가 이 때에 우리 민족생활 속에 정착되면서 存立運營되

고 있었음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우리의 契는 고유한 성격의 바탕에서 血緣集團을 비롯하여 地域共同體集團 그리고 利益集團의 태두리 내에서 相扶相助精神에 의한 결속강화의 講究目的에서 存立運營되고 있음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姜昌奎, 「農村契의 屬性에 關한 研究」, 『農業政策研究』, 1978.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農協調查月報』, 1988. 8.

大韓地方行政共濟會, 『地方行政』, 1985.

宋鍾福, 『協同組合論』, 1962.

李萬雨, 『山林契貸付國有林에 對한 考察』, 1968.

李丙壽, 『우리의 原始民主制와 그 變遷』, 1958.

崔虎鎮, 「契」, 『經濟學辭典』, 195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마을社會集團의 組織과 變遷』, 1987.

宮原鬼一, 『朝鮮の契に關する考察』, 1953.

文定昌, 『朝鮮農村團體史』, 1942.

善生永助, 『朝鮮の契』, 1926.

李清原, 『朝鮮社會史續本』, 1936.

李覺鍾, 『契ニ關スル調査』, 1923.

崔南善, 『故事通』, 1943.